

워싱턴주 한인 미술인협회 회칙

제 1 조 명칭

본회는 “워싱턴주 한인미술인협회”(이하 본회라 칭함)라 칭한다. 영문 명칭은 “Korean-American Artist Association of Washington State” (약칭 KAAW)로 정하고 워싱턴 주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함.

제 2 조 소재

본회의 사무실은 워싱턴 주 내에 둔다.

제 3 조 목적

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1 회원의 미술작품 활동 및 발표 지원
-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- 3 미술인 후진 양성
- 4 지역사회 봉사 및 문화 활동 참여

제 4 조 사업

본회는 위의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.

- 1 연 1 회 정기전시회를 포함한 작품 발표회 운영
- 2 미술 세미나, 워크숍 등 개최
- 3 미술 후진양성 및 장학 사업
- 4 기타 관련 사업

제 5 조 회원

1 본회의 회원은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자로서 미술전공 또는 전시경력이 있거나 작품활동을 3 년이상 한 자로 소정의 심사를 거친 자로 한다.

신입회원 및 재가입 회원 심사는 mentoring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.

2 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신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주어진다 (2015).

2-1 수정보안: 회원 자격은 신입회비/재가입비 \$100 과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주어진다.

3 회원의 신규가입 심사, 징계 등은 mentoring 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4 활동을 쉬거나 탈퇴한 자가 회원으로 복위할 경우, 자격은 소정의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주어진다.

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

1 본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행사에 참여하며 회의시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단 회원자격이 3 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신입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.

2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납부해야 한다. (2 번 이상 연체될 경우 회원자격을 자동 상실한다)

3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4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와 장기간 활동 부재자에 대하여 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.

5 본회의 회원은 최소 한개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해야할 의무가 있다.

6 본회의 회원은 2 번 이상의 정기총회와 커미티의 적극 활동을 참고하여, 협회 정기전시 참여에 반영한다.

제 7 조 총회 및 모임

1 연 1 회 정기총회를 갖되 회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, 재정보고, 회칙개정, 회원 가입, 각종 선거 및 기타사항을 토의한다.

3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의 2/3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회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5 매분기 1 회의 각종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8 조 임원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사업을 총괄하고 총회, 임원회 및 각종 모임을 주관한다.

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추진한다.

4 회계는 본회의 재정, 수입, 지출업무를 담당한다.

5 감사는 본회의 재정운영을 감사한다.

제 9 조 임원의 선출

1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2 회장 및 부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에 3 년 이상 봉사한 회원으로 제한한다.

3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신임 회장이 선임하되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얻도록 한다.

4 회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 10 조 위원회 운영

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위원회의 구성은 회장단이 협의하여 2~3 명의 책임자를 선임 위촉한다. 회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1 Program Committee 는 협회 program 과 member education 담당하고 협회 발전을 위한 홍보를 담당한다.

2 Sunshine Committee 는 회원의 경조사 및 정기모임을 관리한다.

3 Exhibition Committee 는 전시회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논한다.

4 Scholarship Committee 는 본회에 위탁한 장학금의 수혜자를 선발등을 협의한다.

5 Website Committee 는 본회의 웹사이트를 웹디자이너와 함께 관리운영한다.

6 Mentoring Committee 는 신입회원의 가입자격 심사, 및 회원의 징계 등 협회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 11 조 재정

1 본회의 경비는 회비, 찬조금, 기부금, 위탁금,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2 일반경비는 예산을 정하여 임원들이 협의하여 지출토록 한다.

3 재정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의견과 함께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.

4 회원의 경조사에 소정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 (회원 개인전 연 1 회 한정)

제 12 조 기타

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.

부칙

1 본회의 정액 비용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.

신입회원의 입회비: \$100, 연회비: \$100, 경조사비 \$50

개정된 본 회칙은 2024 년 1 월 28 일부터 적용한다.